

대 외 비 (사외비)

----- 목 차 -----

- 제 1조 목적
- 제 2조 적용범위
- 제 3조 권한
- 제 4조 구성
- 제 5조 위원장
- 제 6조 소집
- 제 7조 소집권자
- 제 8조 소집절차
- 제 9조 결의방법
- 제10조 부의사항
- 제11조 의사록
- 제12조 규정의 제·개정
- 제13조 간사
- 제14조 부록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정

문서번호 : 023  
개정번호 : 03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

이 규정은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 3조 권한

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의 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

위원회는 회사의 독립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독립이사의 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제 4조 구성

1.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2.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

1.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 제 5조 위원장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위원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 6조 소집

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정

문서번호 : 023

개정번호 : 03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

위원회는 회사의 독립이사 후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 제 7조 소집권자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 8조 소집절차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3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9조 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2.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

2. 위원회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 10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

1. 독립이사후보의 추천
2. 기타 독립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 의사록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

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12조 규정의 제·개정

1.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위원회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3조 감사

1. 위원회에 감사를 둔다.
2. 위원회 감사는 경영관리담당 팀장 또는 임원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제14조 부록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제정·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3월 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개정·시행한다.